	주	택임대차표	준계약서	□모등 □전세	금 있는 월세 □월세	
임대인()과 임)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주틱	법의 표시]					
소 재 지	(도로명주소)					
토 지	지목		면적		m²	
건 물	구조•용도	면적	면적 m²			
임차할부분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동층호 정확	확히 기재	면적		m²	
	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	일자 현황			
□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 날인옌	□ 해당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_.		확정일자	부여란	
	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II. 개업공인 사항'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사항'에 기재)		9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		에는 별도로 확정일자	
•	과 차임 및 관리비) 위 부동 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여 임대인과 임차	인은 합의에 의하여	후 보증금과 차임	
보증금	급	원정(₩ 	t)		
차임(월세)	금 원정원	은 매월 일에 지불	한다(입금계좌:)	
	(정액인 경우) 총액 금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정(₩)		
	1. 일반관리비 금	원정(₩) 2. 전기료		원정(₩)	
관 리 비	3. 수도료 금	원정(₩) 4. 가스 사용회		원정(₩)	
	5. 난방비 금	원정(₩) 6. 인터넷 사원		원정(₩)	
	7. TV 사용료 금	원정(₩) 8.기타관리타		원정(₩)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병	방식을 기재(예: 세디	내별 사용량 비례	, 세대수 비례)		
임차인에게 제3조(입주 :	·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원	도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ł	
합의한다.						
수리 필요	요 시설 □ 없음 □ 있음	음(수리할 내용:)	
수리 완료	로 시기 🗆 잔금지급 기	일인년				
	완료 시기 : □ 수리비를 임 한 경우 □ 기타(공제)	
	택의 사용·관리·수선) ① 일 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0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나 임차권 양도를	
	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E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	
	사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	에 관한 부담은 민법	, 판례 기타 관습	에 따른다.		
임대인부터	기계되다 이 지어의 그의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갱신요구와 거절)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자신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의한다.
- 제9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10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소유자인 경우)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분쟁의 해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약사항]

•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년월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지방세가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 동의 □ 미동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 없음 🗆 있음 ※공사시기 : ※ 소요기간 : 개월)
•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자 외 제3자와 동거하거나, 임차권을 전대·양도할 수 없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은 매 장마다 간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원 월 일

임대인	주 소						
인	주민등록번호	2	전 화		(소 (요		날인⑩
임 차 인	주 소						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전 화		성 명		날인⑩